

시설관리규정

제정 1986.12. 3 개정 1994. 3. 1 개정 2001. 6. 1
개정 1989. 5.29 개정 1994. 6.18 개정 2021. 4. 1
개정 1992. 3. 1 제정 1997. 4. 1 개정 2025.12.18
개정 1993.10. 9 개정 1998.12.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보유, 운영하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의 시설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대학이 보유한 유형고정자산 중 다음 각 항목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물: 개별 건축물대장을 가진 독립된 건축물
 - 나. 구축물: 건물이 아닌 인공 건축물
 - 다. 부대설비: 건물과 구축물의 기능 유지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일체로서 기계설비, 전기설비, 토목시설, 통신설비, 소방설비, 자동제어설비,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2. “시설관리”라 함은 시설이 최적 상태로 유지되어 그 기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으로서 시설의 계획, 설계, 설치, 점검, 정비 등의 활동 전반을 말한다.
3. “시설운영”이라 함은 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운전, 제어, 에너지 관리, 상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시설운용”이라 함은 시설을 목적에 따라 직접 사용·활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점검”이라 함은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정비”라 함은 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고 고장·결함을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유지관리 행위를 말한다.

7. “시설관리부서”라 함은 전문 분야(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시설에 대하여 제2호의 시설관리 및 제3호의 시설운영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시설운영부서”라 함은 제4호의 시설운영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시설운영부서의 소관시설물”이라 함은 부서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부서에서 개별 설치한 연구기자재 및 설비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 2 장 업무 구분

제4조(업무의 구분) 시설관리의 주체는 시설운영부서와 시설관리부서로 나누어 수행한다.

제5조(시설운영부서의 업무) 시설운영부서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운영부서의 소관시설물 관리, 운영 및 정비
2. 운용 시설물 이상 상태 발생 또는 징후 발견 시 시설관리부서에 시설신고
3. 운용 시설물 일상점검, 예방점검 및 경미한 사항 조치
4. 운용 시설물 청결유지
5. 태풍, 폭우, 폭한 등 천재지변 발생 시 운용 시설물 점검 및 대응
6. 시설관리부서의 시설관리 업무 추진 시 협조
7.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설관리부서의 업무) 시설관리부서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관리 계획 수립
2. 시설관리 계획에 따른 시설물 정비
3. 시설신고, 기술검토, 법정검사 대응
4. 건립 및 리모델링 공사 관리
5. 에너지 사용량 관리
6. 시설 안전 관리
7.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시설관리

제7조(임무) ① 시설운영부서는 시설물 본연의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맞는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용 과정에서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협조한다.

② 시설관리부서는 시설의 운영, 점검 및 시설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제8조(기술검토) ① 시설운영부서에서 시설의 설치·변경·철거 등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 검토 단계에서 시설관리부서에 기술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시설관리부서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단, 자체적인 시설관리부서를 운영 중인 독립채산기관의 경우 해당 시설관리부서의 기술검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술검토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가. 시설공사 및 실험장비 설치 기술검토서

나. 설계도서

다. 설비, 장비 등 사양서

라. 참고자료

제9조(시설신고) ① 시설운영부서는 운영 시설물에 대한 일상,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이상 발생 시 시설관리부서에 즉시 신고한다.

② 시설관리부서는 시설운영부서 및 대학 구성원으로부터 접수된 시설신고 내용 및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조치를 검토한다.

③ 시설신고 내용은 통계분석 및 시설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10조(법정검사) ①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검사,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학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검사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한다.

제11조(시설공사) ① 시설물에 대한 점검, 법정검사, 시설신고 결과 또는 시설관리 계획에 의거하여 시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해당 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설공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공사 착공, 진행 및 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서류는 공사 시행 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특수시설 관리) 방사성동위원소, 액화석유가스, 소방, 고압가스 등 특수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분야별 별도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의 2(방사성동위원소 시설물 관리) 방사성동위원소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의 3(액화석유가스 시설물 관리) 액화석유가스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의 4(소방시설물 관리) 소방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방화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의 5(고압가스 냉동제조 시설물 관리) 고압가스 냉동제조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압가스 냉동제조 안전관리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고장이력 관리) 시설물 고장, 이상상태 발생 시 해당 사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 시설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장 환경관리

제14조(임명) ① 환경관리인은 관계 법령의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로 각각 임명하고,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과 또는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을 담당하는 환경관리인은 폐기물 종류별(연구실폐기물,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담당자를 구분하여 적법하게 운영한다.

제15조(임무) 환경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환경관리 업무 수행 및 결과 기록
2.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6조(환경관리 점검 및 기록) 환경관리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 관련 시설 및 운영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10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6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으로 환경관리 규정은 개정 시행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규정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지침으로 변경하여 이 규정 하위지침으로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일로부터 고압가스 냉동제조 안전관리지침을 이 규정 하위지침으로 시행한다.